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 모집 공고

인천우체국에서 소포우편물 접수보조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인천우체국장

1. 채용 직종 및 인원

채용직종	근무부서	채용인원	담당업무	계약기간
우정실무원 (기간제, 전일제)	인천우체국 소포실 【현장 출장근무】 (평택항-경기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55 소재)	3명	- 소포접수보조 - 소포우편물 상하차 및 적재, 정리 업무 - 기타 부대업무	채용시 ~ 2020.12.31.(목)

*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를 거쳐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2. 근로조건

< 우정실무원 >

가. 신분 :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

나. 계약기간 : 채용시 ~ 2020.12.31.(목)

다. 보 수

o 기본임금(일급제68,720원)

o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

라. 근무일수 및 시간

o 근무일수 : 주5일(평일 월~금)

o 기본 근무시간 : 1일 8시간 근무

※ 초과 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

3. 응시 자격 및 요건

1.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 : 채용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

나.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

다.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**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**는 응시 불가

라.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동법 제3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○ **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**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**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마.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

4. 응시방법

가. 접수기간 : 모집인원 채용시까지(전화확인 요망)

o 적격자 판단 후 채용

o 평일 09:00~18:00까지 방문접수

(단, 평일 점심시간(11:30~12:30) 및 토・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)

나. 접수장소 : 인천우체국 4층 지원과

o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6

다. 제출서류

o 이력서 1부(사진부착), 주민등록초본 1통, 우체국통장 사본 1부
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우체국 지원과(032-850-81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